
2024년 디딤돌 안정소득 사업 안내

시민이 행복한
인천, **공감복지**^{2.0}

 인천광역시
복지정책과

목 차

| | | | |
|------------|-----------------------|-------|----|
| I | 제도 개요 | | |
| | 1. 추진배경 | | 1 |
| | 2. 지원개요 | | 1 |
| | 3. 업무 프로세스 | | 3 |
| II | 신청 및 선정기준 | | |
| | 1. 기본 원칙 | | 4 |
| | 2. 상담 및 신청 | | 4 |
| | 3. 보장의 단위 | | 7 |
| | 4. 선정기준 | | 8 |
| III | 조사 및 보장결정 | | |
| | 1. 조사 원칙 | | 10 |
| | 2. 소득 조사 | | 11 |
| | 3. 재산 조사 | | 12 |
| | 4. 부양의무자 조사 | | 13 |
| | 5. 보장결정 | | 14 |
| IV | 근로능력 판정 및 자격관리 | | |
| | 1. 근로능력 판정 | | 15 |
| | 2. 근로능력 변경처리 | | 17 |
| V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 | | |
| | 1. 구성 및 운영 | | 17 |
| | 2. 위원회 기능 | | 18 |

VI

급여의 실시

| | | |
|--------------|-------|----|
| 1. 급여의 종류 | | 19 |
| 2. 생계급여 세부내용 | | 19 |
| 3. 해산·장제급여 | | 19 |
| 4. 급여의 지급 | | 19 |
| 5. 급여의 변경·중지 | | 20 |
| 6. 계좌 관리 | | 21 |

VII

자격관리

| | | |
|----------------------|-------|----|
| 1. 변동 및 사후관리(확인조사) | | 22 |
| 2. 근로능력 가구의 사후관리 | | 23 |
| 3. 보장기간 도래자에 대한 처리방안 | | 24 |
| 4. 보장비용 환수 | | 25 |

VIII

서식

| | | |
|-------------------------------------|-------|----|
| 1-1. 디딤돌 안정소득 급여 신청서 | | 29 |
| 1-2 디딤돌 안정소득 재신청 또는 확인조사에 따른 동의서 | | 30 |
| 2. 해산·장제급여 지원 신청서 | | 31 |
| 3. 디딤돌 안정소득 급여 결정 (결정·변경·중지) 통지서 | | 32 |
| 4. 복지급여 계좌변경 신청서 | | 34 |
| 5. 디딤돌 안정소득 생활실태조사서 | | 35 |

알 아 두 기

- 디딤돌 안정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기준에 부적합한 비수급 빈곤계층 중 신청일 현재 인천에 거주하고 있으며 디딤돌 안정소득 선정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동 지침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다른 부분을 중심으로 기술했으며 동 지침에 기술되지 않은 부분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의 내용을 참고하여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디딤돌 안정소득 수급자의 신청 및 조사과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동일하며 조사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를 먼저 판단한 후 부적합한 자에 대해 디딤돌 안정소득 수급자 여부를 다시 판단하고, 아울러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확인조사 등으로 중지된 자도 디딤돌 안정소득 수급자 여부를 다시 판단하여 수급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 국민기초보장수급자가 확인조사 등으로 국민기초는 중지되나 디딤돌 안정 소득으로 변경 가능한 세대는 관리팀에서 직권으로 자격 변경하고, 디딤돌 안정소득 신청서 작성·제출을 안내하며 제출서류는 조사팀에서 보관 합니다.
- 디딤돌 안정소득 수급자에게는 생계급여를 지급하며, 맞춤형복지(생계·의료·주거·교육)대상자와 긴급복지지원(생계급여) 관련 타 지원과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 디딤돌 안정소득 신규 신청자의 민원 처리기한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일을 기준으로 40일(연장 시 70일)입니다.

2024년 디딤돌 안정소득 주요 개정사항

'24년 선정기준 및 지원금액 : 중위소득 인상분 (6.09%, 4인가구) 반영

○ 선정기준 :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6.09%인상)
(단위: 원)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 '24년 기준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 '24년 디딤돌 안정소득 선정기준 (중위 50% 이하)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 지원금액 : 맞춤형 생계급여의 50% (정액지원) 지급 (13.16%인상)
(단위: 원/월)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 '24년 정부형 기초 생계급여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 '24년 디딤돌 생계급여 | 356,551 | 589,218 | 754,345 | 916,786 | 1,071,318 | 1,218,939 |

지침 변경사항

| 연번 | 구분 | 2023년 | 2024년 |
|----|----------------------------------|--|---|
| 1 | 선정기준 (2, 3, 8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기준 - 1억3천5백만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 6천9백만원 별도) * '23. 4월 신설, '23.5월부터 적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기준 - 1억3천5백만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 6천9백만원 별도) |
| 2 | 지자체 개별 전산시스템 (3, 19, 23, 25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산시스템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산시스템 본개통 * '24.3월 지자체 개별 전산시스템 본개통 계획 반영 |
| 3 | 자동차 기준 (2, 3, 9, 12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거나 감면하는 자동차 • (승용) 2000cc 미만이며, 10년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 (승용·화물) 소형 이하 승합·화물자동차로,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는 자동차 * 2024년 보건복지부 사업안내 준용 세부 지침 변경 • (승용) 2000cc 미만이며,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 (승용·화물) 소형 이하 승합·화물자동차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 기준 명확화 |
| 4 | 보장가구에서 제외하는 가구원 (7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 180일까지 통산하여 6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사람(외국 체류일수가 61일째가 되는 날부터 보장 중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 180일까지 통산하여 60일 (출국일 제외 입국일 포함)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사람 (외국 체류일수가 61일째가 되는 날부터 보장가구에서 제외) * 2024년 보건복지부 사업안내 준용 세부 지침 변경 |

| 연번 | 구분 | 2023년 | 2024년 |
|----|------------------------------|---|---|
| 5 | 부양의무자 조사 (14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 <신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 부양의무자의 소득 또는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 가구 소득평가액만으로는 디딤돌 안정소득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하나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여 생계급여가 선정 제외 또는 중지되는 경우에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가구에 대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실시하여 보장여부 결정 필요 ※ 보장여부 결정 시 필요한 경우 사업팀과 통합 조사관리팀 간의 사례회의 등을 활용 ※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p183 준용 * 2024년 보건복지부 사업안내 준용 세부 지침 변경 |
| 6 |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 (16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인지지원등급 포함) * 2024년 보건복지부 사업안내 준용 세부 지침 변경 |
| 7 | 지방생활보장 2. 위원회 기능 (18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침보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양의무자의 소득 또는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의 보장여부 결정 * 2024년 보건복지부 사업안내 준용 세부 지침 보완 |
| 8 | 급여의 변경·중지 (21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 디딤돌 안정소득 보호 중이라도 맞춤형 복지(생계·의료급여) 기준 적합시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우선 실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 디딤돌 안정소득 보호 중이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기준 적합시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우선 실시 * 혼란을 주지 않도록 내용 수정 |
| 9 | 변동사항의 처리방법 (23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사항 추가 명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급여기준의 변동사항은 기준 변동 시점부터 즉시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1월 급여 지급 시부터 반영 * 연도전환에 따른 반영사항 처리 명확화 |
| 10 | 대상자가 맞춤형급여 수급자로 전환된 경우 (25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급여(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 혼란을 주지 않도록 내용 수정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디딤돌 안정소득 비교

| 구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건복지부) | 디딤돌 안정소득 (인천광역시) | |
|-----------|--|---|--|
| 선정 기준 | 대상 | ○ 대한민국 국민 | ○ 인천광역시 시민 |
| | 소득 · 재산 기준 | ○ 소득인정액 방식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2% 이하 ※ 재산의 소득환산율(월) 적용 주거용재산 1.04%,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자동차 100% | ○ 재산평가분리(Cut-Off) 방식 : 소득평가액 재산평가액 ① 소득 :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 50% 이하 ② 재산 : 1억3천5백만원 이하 (주거공제 69백만원 별도), 금융재산 30백만원 이하 ※ 재산의 소득환산율 미적용 ※ 자동차 기준 별도 (100% 소득환산 자동차 소유가구 지원 제외) |
| | 부양의무자 | ○ 부양능력판정 : 있음 / 없음 ○ 고소득 또는 고재산이 아닌 경우 - 연소득 1억원(월소득 834만원)초과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자가 있는 경우 선정 제외 | ○ 정부의 부양의무자(생계급여)기준 동일 적용 |
| 급여 종류 |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자활, 해산, 장제급여 | ○ 생계급여 ○ 해산·장제급여 | |
| 급여지원 방식 | ○ 생계급여 : 보충급여 방식 (생계급여지급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해산장제급여 : 정액 | ○ 생계급여 : 정액급여 방식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50% ○ 해산·장제급여 : 정부형과 동일 | |
| 업무절차 | ○ 신청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 ○ 국민기초수급자 신청(정부형) → 조사 → 결정 → 탈락자의 디딤돌 수급자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 |
| 전산 시스템 |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오픈마켓 연계 ('24.3 본개통 계획) | |
| 확인조사 | ○ 복지부 자료를 통한 조사 | ○ 선정 후 1년 도래자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재신청(직권신청)을 통한 조사 | |
| 근로 능력자 관리 | ○ 조건부 수급자 등으로 관리 | ○ 한시보호 : 6개월 급여지원 후 중지 | |

1. 추진 배경

- 생활이 어려운 제도권 밖 비수급 빈곤층 사각지대 해소
 - 정부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00.10월)는 그간 개별 맞춤형급여를 도입(15. 7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완화하였으나,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분포함에 따라 지자체별 자구책 마련 필요
- 중앙정부 복지기준 적용으로 인천시민 역차별 발생
 - 중앙정부의 선정기준이 중소도시 기준의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어 인천의 실질적 저소득층이 수급자가 될 수 없는 등 인천시민에게 불리
- 인천시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촘촘한 시민안전 복지체계 구축을 위하여, '21년 10월부터 「디딤돌 안정소득」(구인천형기초생활보장) 추진

2. 지원 개요

가.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인천시 거주자중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정부형 맞춤형 급여 기준이 맞지 않아 법정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
-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긴급복지·SOS 긴급복지(생계지원) 종료 후에도 지원이 필요한 가구 등 비수급 위기가구 등 적극 발굴

나. 상담 및 신청

- 희망하는 복지급여·서비스를 확인하고 신청서·부양의무자 정보 등 이용동의서<별지 제1-1호, 별지 제1-2호 서식>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안내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급여 통합신청)와 병행 신청·조사 의무화
 - ※ 맞춤형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맞춤형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는 신청자의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디딤돌 안정소득' 선택 불가

○ **직권신청 강화**

국민기초 탈락자 또는 중지자는 별도 신청없이 본인의 동의를 얻어
 ‘디딤돌 안정소득 직권신청’

○ 기 수급자인 경우 최초 급여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후 재신청 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병행 신청)

다. 선정기준 : 소득 · 재산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단위 : 원]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 기준중위소득 (2024년)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 디딤돌 안정소득 (중위50%이하)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 단,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이자소득은 소득산정에서 제외

※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일시금은 금융재산 적용(암환자는 일반재산)

○ **재산기준 : 1억3천5백만원 이하 (주거용 공제 6천9백만원 별도)**

√ 기본재산 공제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미적용

- 일반재산 + 자동차 + 금융재산 - 부채

· 금융재산 : 3천만원 초과자 선정 제외(부채 미적용)

※ 단,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은 금융재산에서는 제외하되,
 일반재산에는 포함

· 자동차기준

①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는 자동차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155 준용

②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월 100% 적용하는 자동차”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156 준용하되, 「디딤돌 안정소득」은
 소득환산율 월 100% 적용 자동차 소유가구는 선정 제외 방침

③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 인 월 4.17%를 적용하는 자동차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156 ~ 160준용하되,

(2)승용자동차와 (3) 승합·화물자동차의 경우는 주거·교육 준용

- (승용) 2,000cc 미만이며,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 (승합·화물) 소형 이하 승합·화물자동차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1억, 세전) 또는 고재산(9억)이 아닌 경우
- ※ 정부의 부양의무자 기준(생계급여) 및 조사방식 동일 적용

라. 지원내용

○ 생계급여 : 맞춤형 생계급여의 50% (정액지원)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 맞춤형 생계급여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 디딤돌 안정소득 | 356,551 | 589,218 | 754,345 | 916,786 | 1,071,318 | 1,218,939 |

- 지원기간 : 근로무능력가구(1년), 근로능력가구(6개월)

○ 해산·장제급여 : 출산 시 70만원, 사망 시 80만원

3. 업무 프로세스

| 상담 및 신청 | 조사 | 보장결정 | 급여·서비스제공 | 변동 및 사후관리 | 보장중지 |
|--|--|---|--|--|---|
| <p>읍면동</p> <p>자격 및 서비스 안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p> | <p>통합조사(관리)팀</p> <p>가구구성 확정 ·소득·재산 공적 자료요청 ·근로능력판정 ·조사정보 확인 및 처리</p> | <p>사업팀</p> <p>·복지대상자 선정 및 결정 처리</p> | <p>사업팀</p> <p>·급여지급</p> | <p>통합조사(관리)팀</p> <p>·인적/소득재산 변동 ·누락·중복 서비스 추출</p> | <p>사업팀</p> <p>·부정수급자 급여 중지</p> |
| <p>신청주의와 직권신청 병행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급여통합신청) 우선 ·기초연금 등 타복지 서비스 병행접수 ·맞춤형+디딤돌 동시신청</p> | <p>·보장권자 - 소득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 재산(1억3천5백만원 이하, 주거용공제 69백만원 별도) 금융재산(3천만원 이하) 자동차(국민기초 주거·교육 기준 준용) ·부양의무자 - 소득 : 고소득 1억 이하 - 재산 : 고재산 9억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연계·적용</p> | <p>·근로무능력가구 : 연간 지속 지원 ·근로능력가구 : 6개월(연1회) ※ 1년 경과시 재신청 가능</p> | <p>·생계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의 50% ·해산급여 : 70만원 ·장제급여 : 80만원 ※ 지자체 개별복지 시스템 활용(예정)</p> | <p>·차상위, 기초연금 등 타 복지서비스와 연계하여 사후관리 ·타 법령 수급자 인정하되, 동일(유사) 복지급여 지급 금지</p> | <p>·선정기준 및 지원기간 경과자 급여중지 ·부정수급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절차 운영</p> |

※ 수급 1년 도래자 재신청 가능 (1년 단위 운영)

※ 별도의 업무분장이 된 경우 업무 분장한 바에 따라 추진

※ 지침에서 명시된 사항 외에는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준용

II

신청 및 선정기준

1. 기본 원칙

- 맞춤형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신청자에 대한 최저 생활 보장을 위해 정부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우선 적용 보호
- 정부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시 디딤돌 안정소득 동시신청(의무화)으로 사회보장급여신청 소득재산 자료를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철저
- 동 지침에 명시한 사항 이외에는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 준용

2. 상담 및 신청

가. 급여신청 주체

- 지원대상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 ※ 지원대상자 가구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별도 양식 없음) 지참

나. 급여신청 장소 및 기간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신청 가능

다. 신청 절차

- 상담을 통해 신청가구에 필요한 급여·서비스를 확인하고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안내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디딤돌 안정소득, 기초연금,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사업 등 타 복지급여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안내
- 필요 급여 및 서비스에 대한 일괄 신청·접수, 직권신청 강화
 - 신청주의와 직권주의 병행
 - 신규신청의 경우 직접신청과 본인 동의를 의한 직권신청 병행

√ 신청주의를 기본으로 하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 지역 내에 거주하는 생활이 어려우나 급여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자에 대한 급여를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 가능

- 확인조사 등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중지자는 본인 동의를 통한 직권신청 · 접수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지자의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디딤돌 안정소득」 유입 가능 여부 확인 후 (직권)신청 처리
⇒ 디딤돌 안정소득 신청서 징구

- 「디딤돌 안정소득」 확인조사는 「디딤돌 안정소득」 수급 1년 도래자에 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재신청 · 조사로 수행
-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맞춤형급여 통합신청)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신청 병행 접수

√ 부양의무자를 조사하지 않는 주거, 교육급여 개별신청 시는 「디딤돌 안정소득」 병행 신청 불가
√ 부양의무자를 조사하는 생계, 의료급여 중 하나만 신청해도 「디딤돌 안정소득」과 병행신청 가능

- 단, 현재 타급여 지원대상자(기초연금,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등)가 「디딤돌 안정소득」을 신청할 경우에는 ‘차상위계층확인’ 연계 신청 생략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서의 ‘안내 및 유의사항’을 먼저 민원인에게 설명하고 「디딤돌 안정소득 신청서」상의 정보 조회 동의 서명을 받은 후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회하여 반영

라. 신청 구비서류

- 「디딤돌 안정소득 급여 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 「부양의무자 정보 등 이용 동의서」 <별지 제1-2호 서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구비서류
- 신규신청의 경우, 디딤돌 안정소득 급여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병행 신청
(신청일 기준 현재 타 급여 지원대상자가 아닌 경우 ‘차상위계층 확인’ 신청도 병행 접수)

-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p24)」에 따라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수급권자의 경우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 절차 안내 및 직권 신청 실시

※ 긴급복지(SOS긴급복지 포함) '생계지원' 대상자는 지원이 종료된 후에 디딤돌 안정소득 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기간에는 신청 불가함

- 「디딤돌 안정소득」 탈락 후 재신청 및 보장기간 1년 도래자 확인 조사의 경우 「디딤돌 안정소득 재신청, 확인조사에 따른 동의서」 <별지 제1-3호 서식> 사용 가능

(단,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절차 생략 불가)

① 디딤돌 안정소득 신규 신청자의 경우(i 과 ii 모두 징구)

i. 디딤돌 안정소득 급여 신청서(별지 제1-1)

ii.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

② 3개월이내 월별, 정기 확인조사 등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 중지자 및 정부형 기초생활보장 신청에 따른 **책정 제외자**의 경우(ii 징구)

i. 대상자 동의에 의한 직권신청 및 기 제출 서류는 미징구

ii. 디딤돌 안정소득 급여 신청서(별지 제1-1)

※ 3개월내 중지자 및 제외자의 경우 적용, 그 외는 i 과 ii 모두 징구

③ 디딤돌 안정소득 **탈락 후 1년** 이내 재신청, 확인조사의 경우(i 과 ii 모두 징구)

i 디딤돌 안정소득 재신청, 확인조사에 따른 동의서(별지 제1-2)

ii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 시 동일한 서류 징구

마. 신청의 제한

- 주민등록이 인천시에 등록된 실제 거주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지원 불가
- 긴급복지(생계지원) · SOS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의 경우 지원 완료 후 신청 가능

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후 통합조사 · 관리부서로 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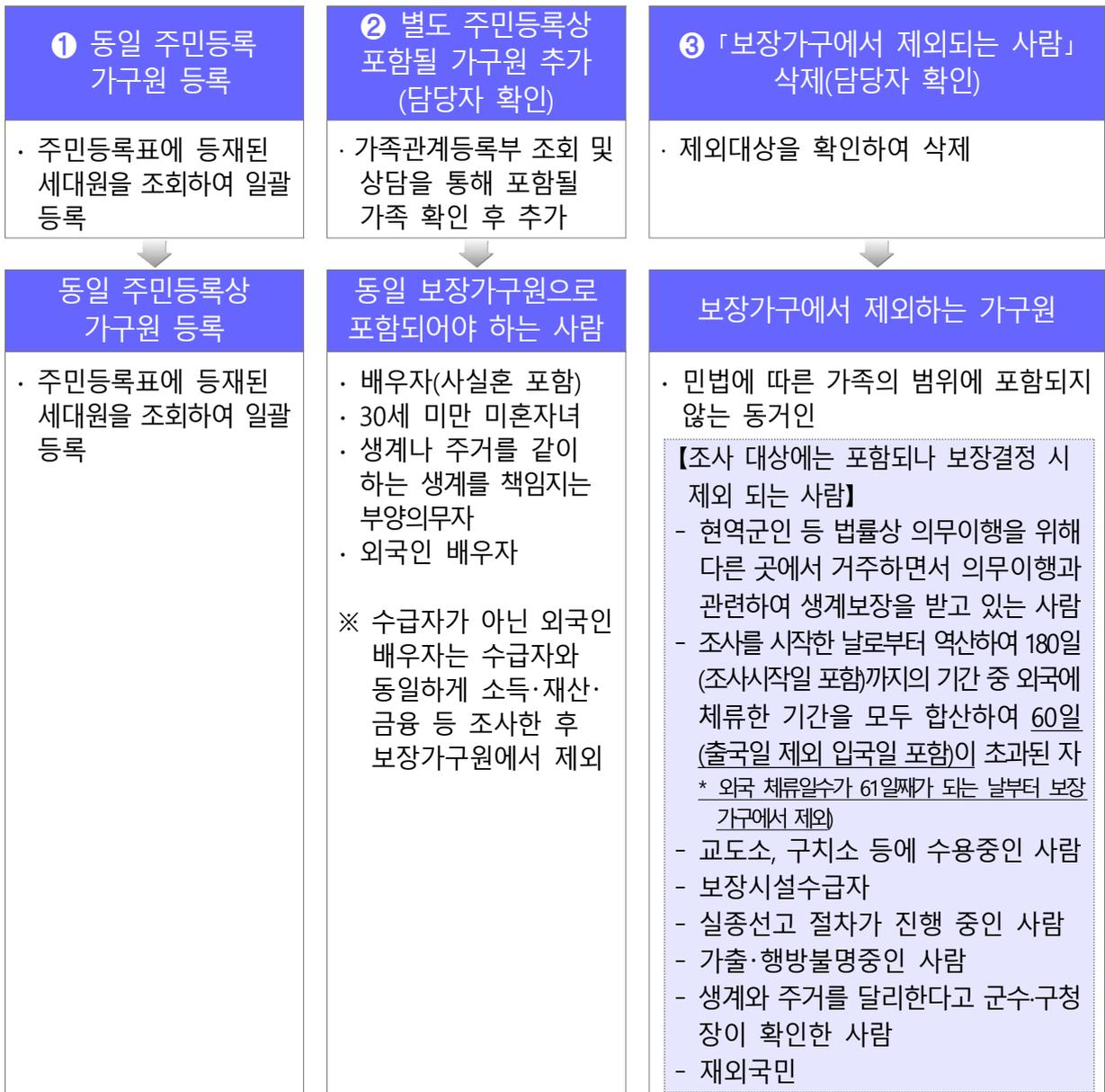
3. 보장의 단위

가. 가구단위 보장 원칙

나. 보장가구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가구 범위 준용
- 가구 범위 확정 절차
 - 동일 “주민등록등본” 에 기재된 자(세대원)를 조회하여 일괄 등록
 - 동일 보장가구에 포함할 구성원 추가 및 제외할 가구원을 확인하여 삭제

【가구구성 처리 절차】



※ ‘조사대상에는 포함되나 보장가구에서 제외하는 가구원’은 조사 시 가구원으로 등록하여 조사를 실시한 후 보장결정시 급여·서비스 대상에서 제외

다. 별도가구 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 급여)에서 별도가구로 인정받은 경우 나머지 비수급 가구는 디딤돌 안정소득 신청 대상이 아님에 유의할 것

-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별도가구 보장 지침 동일 적용 (생계급여 준용)
 - 별도가구로 인정되어 디딤돌 안정소득 대상으로 선정된 사람 외의 나머지 가구원 중 수급자의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 보장 대상자와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1촌 혈족 및 그배우자’로 처리하여 소득 및 재산기준 적용
- 동일 보장가구의 세대원이 건강상의 문제로 타 시·도에 소재하는 병원 및 요양원에 입소한 경우 동일 보장가구로 인정
 - ※ 단, 보조금을 지원 받는 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주소지를 두고 있는 대상자는 제외

4. 선정기준

가. 소득기준, 재산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나.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단위 : 원)

|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소득기준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다. 재산기준

- 가구당 재산액 : 13,500만원 이하 (주거용 공제 6천9백만원 별도)
(일반재산 + 자동차¹⁾ + 금융재산 - 부채)

√ 기본재산 공제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미적용

- 금융재산 : 3천만원 초과자 선정 제외
 - ※ 단,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되, 일반재산에 포함
 - ※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일시금은 금융재산으로 적용(단, 암환자는 일반재산 산정)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사기준 준용, 감면·일반재산 적용 자동차는 차량가격으로 일반재산에 산정

· 자동차기준

①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는 자동차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155 준용

②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월 100% 적용하는 자동차”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156 준용하되, 「디딤돌 안정소득」은
소득환산율 월 100% 적용 자동차 소유가구는 선정 제외 방침

③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 인 월 4.17%를 적용하는 자동차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156 ~ 160준용하되,

(2)승용자동차와 (3) 승합·화물자동차의 경우는 주거·교육 준용

· (승용) 2,000cc 미만이며,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 (승합·화물) 소형 이하 승합·화물자동차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 선정제외

- 금융재산 3,000만원 초과 가구(부채 미공제)

- 소득환산율 월 100% 적용 자동차 소유 가구

라.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범위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범위 준용

○ 부양의무자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1억, 세전) 또는 고재산(9억)이 아닌 경우

※ 정부의 부양의무자 기준(생계급여) 및 조사방식 동일 적용

Ⅲ 조사 및 보장결정

1. 조사 원칙

가.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등 신고내용 확인 및 보장가구 구성 확정

나. 근로능력 판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사 시 판정결과 적용

○ 근로능력 없는 디딤돌 안정소득 수급자

- 18세 미만, 65세 이상

-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중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

가.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 (P.96 ~ P.99)

나. 법률상 의무를 이행 중인 사람으로 사회복지무요원, 상근예비역은 근로무능력자로 인정함

※ 외국인 배우자는 수급자 보장가구원에서 제외하므로 근로능력판정 유무 대상에서 제외함. 즉, 외국인 배우자가 근로능력이 있더라도 나머지 가구원이 근로능력이 없고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책정 가능함

다. 근로능력상태 변경(능력→무능력)

○ 디딤돌 안정소득 수급자 책정 후 근로능력상태 변경 시(능력→무능력) 증빙 서류(병원 진단서)를 첨부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근로무능력 판정가능하며, 심의 시 보호기간 설정하여 심의토록 할 것

√ 근로능력 판정 유예기간 만료가 도래하였으나, 부득이하게 만료 전 지방생활보장위원회 미개최로 인하여 자격이 중지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심의를 개최하여 결정하도록 함. 단, 결정시까지 자격 중지는 유예 함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에 의한 근로능력판정결과 근로능력 없음 (유→무)으로 변동될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없이 “근로 능력 없음” 으로 변경 가능

라. 공적자료 조회 요청 후 조회결과 확인 및 반영

마. 소득·재산조사는 통합조사팀이 일괄 실시하고 행복e음을 통해 조회된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

- 소득·재산의 변경내용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수정 조치

바.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 및 부채도 신청세대로 포함하여 적극 구제

※ 부채인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방식과 동일하며 공적자료 및 소명자료 제출이 어려울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사. 신규 신청자가 맞춤형급여 수급자(조건부 수급자) 기준에는 적합하나 자활사업 등에는 참여하지 아니하고, 「디딤돌 안정소득」만 신청하는 경우 「디딤돌 안정소득」 신청 제한

2. 소득 조사

가. 선정 기준의 “소득” 은 “소득평가액” 을 의미

-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 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 공제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

$$\text{소득평가액} = \text{실제소득} - \text{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text{근로소득공제액}$$

나. 실제 소득 산정 시 다음의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함

-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보장기관 확인소득, 이자소득

다. 공적이전소득 및 그 외 소득 조사는 맞춤형급여 수급자 소득유형별 조사방법 준용

3. 재산 조사

가. 재산의 종류는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으로 구분

나. 재산가액 선정 기준은 공적자료에 의한 가격을 원칙으로 적용하되, 변경 내용이 증빙자료 등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수정 가능

다. 금융재산의 산정 제외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되, 일반재산 산정에 포함

※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일시금은 금융재산으로 적용(단, 암환자제외)

라.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제한

-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 소유 시에는 「디딤돌 안정소득」 수급자 선정 불가

√ 재산가액에서 제외·감면하는 자동차와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는 재산의 소득환산율 월 100% 적용

· 자동차기준

①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는 자동차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155 준용

②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월 100% 적용하는 자동차”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156 준용하되, 「디딤돌 안정소득」은 소득환산율 월 100% 적용 자동차 소유가구는 선정 제외 방침

③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 인 월 4.17%를 적용하는 자동차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156 ~ 160준용하되,

(2)승용자동차와 (3) 승합·화물자동차의 경우는 주거·교육 준용

· (승용) 2,000cc 미만이며,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 (승합·화물) 소형 이하 승합·화물자동차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마. 기타 산정 재산

- 기 산정된 재산을 증여 및 처분(매매, 금융재산 감소 등)한 경우 처분(감소)한 재산의 가액에서 타 재산 증가분, 본인 소비금액,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가액을 처분(증여)한 날로부터 3년 동안만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
- 단, 보장가구의 3개월 내 처분한 재산은 필요시 증빙자료 등을 제출토록 하여 생활실태 및 재산은닉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음

바. 그 외 재산 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재산유형별 조사방법 준용

- 명의대여 재산은 불법사항이므로 재산공제 불인정
- 기본재산액 공제는 미적용
- 부채 차감 순서
 - 1순위 : 일반재산(주거용재산, 자동차 포함)
 - 2순위 : 금융재산
- 단, 재산기준에는 적합하나 부채차감 순서(일반재산 → 금융재산)에 따라 부채를 차감할 경우 금융재산 초과로 수급자 책정에서 제외(중지)되는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차감 순서 변경 가능

4. 부양의무자 조사

가. 부양의무자의 유무확인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부양의무자 유무 및 가구원 확인
- 부양의무자 중 「디딤돌 안정소득」 신청자의 동일가구(보장가구)에 속하는 자를 제외한 부양의무자(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아들, 딸 등)를 확인
 - ※ 부양의무자 범위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1억, 세전) 또는 고재산(9억)이 아닌 경우
 - ※ 정부의 부양의무자 기준(생계급여) 및 조사방식 동일 적용

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소득·재산)및 부양여부 사실조사

- 행복e음을 통해 조회되는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판정하되,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부양의무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
 - ※ 소득, 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등

다. 부양의무자의 소득 또는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신청자 가구 소득평가액만으로는 디딤돌 안정소득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하나,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여 생계급여가 선정 제외 또는 중지되는 경우에는
 - 개별 가구에 대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실시하여 보장여부 결정 필요
 - ※ 보장여부 결정 시 필요한 경우 사업팀과 통합조사·관리팀 간의 사례회의 등을 활용
 - ※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183 준용

라. 부양의무자의 부양 거부·기피 등의 사유 발생 시 적극적 발굴 지원

- ‘부양의무자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음’ 을 주장하고 부양의무자가 동의서 등을 미 제출하는 경우에도 사실 확인을 통해 적극 발굴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조사과정에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음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디딤돌 안정소득」 조사 과정에서 확인하여 보장 실시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적극 활용
 - ↳ 「디딤돌 안정소득」 선정 조사 시 사실 확인하여 선보장 후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3개월 이내)

5. 보장 결정

가. 소득·재산조사 결과 및 기타 자격요건 조사확인 후, 선정기준 여부와 급여액 내용 결정

- 근로무능력가구, 근로능력가구로 구분하여 급여 지원
 - 근로무능력 가구 :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
 - 근로능력 가구 : 근로능력자가 있는 가구

나. 근로능력가구의 디딤돌 안정소득 안주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보장기간 제한 : 6개월, 연1회

다. 결정내용을 신청인에게 서면 통지 원칙

- 「디딤돌 안정소득 급여 결정 통지서」 <별지 제3호 서식>

IV 근로능력 판정 및 자격관리

1. 근로능력 판정

가. 조사방법 : 근로능력 판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 급여)
수급자 조사 시 판정결과 적용

나. 자격대상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및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로 구분

※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96~99 참조

다. 근로능력판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준용)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로서 다음의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2024년 기준 18세(2006년생)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2024년 기준 65세(1959년생) 생일이 속한 달의 이전 달까지

※ 18세 미만 및 65세 이상인 수급자는 당연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임

-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증장애인
-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군수·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 그 밖의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 20세 미만의 중·고교 재학생(재학증명서 첨부)

* 만 20세(2024년 기준, 2004년생)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일 근로 능력자로 전환

* 한겨레중고등학교(북한이탈주민자녀)에 재학 중인 20세 이상 재학생은 근로 곤란자로 판단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 해당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인지지원등급 포함)
-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수급자의 기준 및 일반기준(제2023-248호)」 별표2의 희귀·중증난치질환 해당자 및 건강보험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2023-286호)」 별표3의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 * 산정특례 등록한 본인에 한해 희귀·중증난치질환 및 암환자는 5년간, 중증 화상환자는 1년(6개월 연장 가능)간 근로능력평가 유예
 - ※ 결핵질환은 기존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에서 ‘16.7.1일부터 ‘결핵질환 산정특례’로 별도 분리.등록기간(등록시작일~치료종료시까지) 동안 국민기초 1종 수급 및 근로능력평가 유예
 - *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등록제에 따른 등록자 확인방법 (기존수급자)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 후 산정특례 등록자인 경우 근로능력평가 유예 및 적용기간 입력 (신규수급자:기초수급 예정자로 신청일 현재 건강보험 가입대상) 건강보험공단(지사)에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하여 산정특례 등록자에 대해 ‘근로능력 없음’ 판정처리
 - ※ 단, 산정특례 등록대상자이나 미등록 상태인 경우는 신청자가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조치
- 인간면역 결핍 바이러스 환자(HIV/AIDS, 상병코드 B20~B24)의 경우 최초 급여 신청 시에만 ‘일반진단서’로 확인하고, 이후 유효기간 없이 계속 적용

라. 기타 법률상 의무를 이행 중인 사람으로 사회복지무요원, 상근 예비역은 근로무능력자로 인정함

- 복무확인서를 첨부 하고, 복무기간 완료 후에는 새로이 근로능력 여부 판정

2. 근로능력 변경처리

가. 디딤돌 안정소득 수급자 책정 후 근로능력상태 변경(능력→무능력)

- 병원 “일반 진단서” 또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를 첨부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근로무능력 판정가능
 -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에 의할 경우 심의 없이 “근로능력없음”으로 변경 가능
- 다만, 근로능력에서 무능력으로 변경 시 “다.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 기준에 해당할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없이 무능력자 처리

나. 디딤돌 안정소득 수급자 책정 후 근로능력가구 연장보호

- 근로능력가구 연장보호는 해당 가구의 생활실태조사서<서식 제5호>를 통해 연장보호가 필요할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장보호 가능(3개월)
 - 생활실태조사서에 가구구성원, 근로능력 유무, 소득·재산 등 변동사항, 건강상태(질병유무), 주 소득원 및 월 수입액, 월 지출액 등 조사
 - ※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중독관리센터, 정신보건센터 등)를 요구하여 판단
- 연장보호 심의대상
 - 실업이나 미취업 등으로 생활이 여전히 어려운 경우
 -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및 학원 수강 등으로 취업 준비 중에 있는 경우
 - 질병으로 근로가 불가능하고 생활이 여전히 어려운 경우
 - 동일 보장가구 내 가족의 질병 등으로 갑자기 일시적인 간병을 해야하는 경우

V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

1. 구성 및 운영

가. 구 성

- 「디딤돌 안정소득」 지방생활보장위원회(소위원회 등)는 별도 구성없이 군·구에 구성되어 있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및 소위원회, 별도위원회를 이용함
 - ※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위원회 등이 대체 가능

나. 운영

- 매월 1회 이상 회의 개최(안건이 발생시)하며, 필요시 서면의결 활용
-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디딤돌 안정소득」 사업과 관련하여 개최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소위원회 등) 심의실적을 별도로 기록관리 할 것
- 기타 위원회 개최 및 운영방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준용하여 처리함

2. 위원회 기능

- 디딤돌 안정소득의 조사·선정 등에 관한 사항 및 보장 비용징수 제외 등에 대한 다음 사항을 심의 함
 - 부양의무자의 소득 또는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의 보장 여부 결정
 -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기피하고 있는 가구의 생활실태로 보아 보장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판단
 - 부양의무자 금융동의서 미제출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사실상 재산이 국·공유지에 준하여 활용되고 있어 조사결과 소유자의 처분 및 활용이 곤란한 재산 판단
 - 디딤돌 안정소득 책정 후 근로능력상태 변경이 필요한 경우(근로능력 있음 → 근로능력 없음)에 대한 판단
 - 재산기준에는 적합하나 부채차감 순서(일반재산→금융재산)에 따라 부채를 차감할 경우 금융재산 초과로 수급자 책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대한 판단
 - 가구특성이나 생활 실태로 보아 수급자 가구가 보장비용을 징수할 수 없을 정도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징수제외(감액포함) 및 결손 처분에 관한 경우

- 보장 가구 내 장애 아동(만 18세미만) 및 치매 노인을 간병·보호해야 할 경우 가족 구성원 1인을 근로무능력자로 판단이 필요한 경우
- 수급자 본인명의 통장개설이 어려운 경우 혈족 이외 제3자 중 이해관계자(실제 수급자를 보호, 지원하는 자)의 계좌로 설정하는 경우
-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상태(이혼전 숙려기간 포함)에 있다고 판단한 경우
- 배우자의 폭력, 학대로 인하여 주거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
 - ※ 위원회 심의결과 부양받을 수 없음을 인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보장 중지하되, 보장비용 미징수(미환수)

VI 급여의 실시

1.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2. 생계급여 세부내용 : 국민기초생활급여의 50%

(단위 : 원/월)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 기초생활 현금급여 (복지부 급여액, A)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 디딤돌 현금급여 (A의 50%) | 356,551 | 589,218 | 754,345 | 916,786 | 1,071,318 | 1,218,939 |

3. 해산·장제급여

- 해산장제급여 : 1인당 700천원 / 1구당 800천원
 - ※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P297~299 준용 지급

4. 급여의 지급

가. 급여 기준일(매월 30일)

나. 지급방법

- 소득·재산, 가구원 등 변동사항 반영 후 매월 급여 지급자료 산출
 - * 지자체 개별 전산시스템 본개통 전까지는 수기계산 병행
- 급여액을 확정하고 회계부서로 지급 의뢰하여 급여이체 및 지급

다. 급여 지급기준

- 급여 신청일이 포함된 달의 급여를 전액 지급하되, 급여지급 기준일을 초과하여 선정된 가구는 그 다음 달에 소급하여 2개월 분의 급여 지급
 - 근로능력가구의 급여는 보장기간(6개월)으로 한정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중지자로서 중지일이 포함된 달 기간 중에 「디딤돌 안정소득」을 (직권)신청하여 해당하는 경우,
중지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달 1일을 급여신청일(급여개시일)로 함
 - ※ 중지일이 포함된 달을 경과하여 「디딤돌 안정소득」을 (직권) 신청하면 신청일을 급여신청일(급여개시일)로 함
 - 「디딤돌 안정소득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변경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신청일부터 소급하여 지급하고, 「디딤돌 안정소득 수급자」로 이중 지급된 급여는 환수 조치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는 「디딤돌 안정소득 보장수급자」를 신청할 수 없으나,
「디딤돌 안정소득 수급자」는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 신청 가능함
- 보장기간 중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에서 없는 가구로 변경 시 최초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간 지원 가능
 -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필요
 - 그 외 급여 지급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기준 준용

5. 급여의 변경·중지

가. 변경 사유 : 소득·재산, 근로능력, 가구원, 거주지 변동 등

나. 변경 내용 : 보장구분, 급여액 등

다. 변동사항 적용 결과 선정기준 초과자에 대하여 급여 중지

라. 전출

- 인천 내 타 군·구 출 시 : 전출한 달까지 급여 지급 후 전입지 통보
- 타 시·도 전출 시 : 전출한 달까지 급여 지급 후 중지

마. 변경내용 및 중지내용을 서면 통지 원칙 <별지 제3호 서식>

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가 이종 지급된 경우 지급된 보장급여 환수 조치

사. 디딤돌 안정소득 보호 중이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 적합시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우선 실시

6. 계좌 관리

가. 디딤돌 안정소득 수급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의 계좌로 입금하며, 급여계좌 수는 1인 1계좌를 원칙으로 함.

※ 압류방지 전용통장 지급 불가

나. 수급자 중 아래와 같은 사항인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제3자 중 이해관계자(실제 수급자를 보호하거나 지원하는 자)의 계좌로 급여지급 가능

- 친인척이 없는 미성년 단독가구 또는 무연고 신원확인 곤란자 등 수급자 본인 명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
 -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상태(이혼전 숙려기간 포함)에 있다고 확인한 경우
 - 배우자의 폭력, 학대로 인하여 주거를 달리하고 있다고 확인한 경우
- ※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 계좌관리 나. 급여계좌 예외(244~246쪽) 준용
※ 제3자는 수급자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3촌이내 방계혈족 이외의 자를 말함

다. 장제급여는 실제 장제를 직접 치룬 제3자 또는 기관(의료기관 등)에 지급할 수 있음

라. 급여계좌 해지 등의 사유로 계좌변경이 필요할 경우 변경가능

※ <별지 제4호 서식> 참조

1. 변동 및 사후관리 (확인조사)

가. 수급자 거주지, 가구구성, 근로능력, 취업상태, 소득·재산 등 자격유지 및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사항을 관리

- 출생·사망 등 보장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변경(감소)이 없는 가구원 변동 시에는 전체(잔여)가구에 대한 가구 재구성 후 소득평가액을 재산정하고, 결혼 등 보장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변경(증가)이 있는 가구원 변동 시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새로 받아 재판정 실시

나. 확인 방법

- 일반적인 확인 : 신고 및 급여변경 신청, 보장기관의 확인조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확인²⁾
 - 「디딤돌 안정소득 수급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자로 선정하여 사후관리 ⇒ 타급여를 받지 않는 대상자의 경우
 - 타급여(기초연금 등) 확인조사에 의한 사후관리

√ 「디딤돌 안정소득 수급자」 사후관리 결과 반영 방법

- 「디딤돌 안정소득 수급자」 중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확인 발급,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 타법의료” 대상자의 확인조사 결과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적합 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보장(디딤돌 안정소득 급여 중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준부적합, 디딤돌 안정소득수급자 기준 적합 시 계속 보장
 - 「디딤돌 안정소득 수급자」 기준 부적합 시 디딤돌 안정소득급여 중지
- 「디딤돌 안정소득 수급자 일제 확인조사에 의한 사후관리
 - ※ 보장기간 1년 도래 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재신청하여 일제조사
- 상담·가정방문 등을 통한 확인
- 가구의 소득, 재산 변동사항 등을 자진 신고토록 부정수급 방지 관련 안내문 발송

2) 각 항목별 주기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자료에 대해서만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통보

다. 변동사항의 처리방법

- 보장기관에 의하여 변동사항이 확인된 그 달에 변동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발생 월 확인이 어려운 경우 확인월 기준으로 적용 함
- 소득·재산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행복e음을 통해 통보된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보장기관에 의하여 변동사항이 확인된 그 달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 행복e음에 의해서 통보되는 소득·재산의 변동사항은 매월 15일까지 반영
-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급여기준의 변동사항은 기준 변동 시점부터 즉시 반영
- 매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1월 급여 지급 시부터 반영

라. 「디딤돌 안정소득 수급자」의 부정수급에 대한 보장 비용 징수(환수) 절차

- 부정수급에 대하여 담당자가 인지한 경우 부정수급으로 등록*한 후 「디딤돌 안정소득 수급자」 급여지급 중지 처리
 - * 지자체 개별 전산시스템 본개통 전까지는 엑셀로 수기 관리 병행 필요
-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보장비용 징수가 어려운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안건상정 후 결손처분

2. 근로능력가구의 사후관리

가. 근로능력가구의 보장기간은 6개월, 연 1회(최초 급여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재신청 가능)로 제한

예) 2024.1.1. 급여신청, 2024.1.25. “근로능력가구” 보장결정

☞ 보장기간은 6개월(2024.1.1.~2024.6.30), 급여 재신청은 2025.1.1. 이후 가능

나. 근로무능력 유효기간 만료 도래자에 대한 처리방법

- 「디딤돌 안정소득 수급자」는 1년 도래 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재신청하여 재조사함으로써 근로능력판정 또한 「근로능력 판정사업 안내」의 판정절차와 판정시기에 따라 동일하게 진행

- 근로무능력 상태가 지속되고 있지 않거나, 근로무능력 유효기간 만료일 까지 진단서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대상자의 근로능력 상태를 “있음”으로 변경하여 6개월 지원 후 보장 중지

3. 보장기간 도래자에 대한 처리방안

가. 목적 : 보장기간 만료에 따른 수급 자격 여부 재조사

나. 시기 : 매월 급여개시일(또는 서비스시작일) 기준 1년 도래시

* 조사기간 소요에 따른 급여지급 공백 최소화

다. 대상 : 「디딤돌 안정소득」 1년 지원가구

→ 관내 군·구로 전출한 경우 공문으로 사전 통보(즉시)

라. 방법 : 재신청에 따른 재조사 안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과 병행하여 조사함을 안내

- 안내문 발송(전화, SMS 및 방문 포함) 실시, 최소 2개월 전 안내
- 안내문 2회 발송 후에도 재신청 없을 경우 자격 중지(관리 철저)
- 재신청 안내문 반송, 미신청 가구는 담당자 현장 조사 후 미신청 사유 확인 <별지 제5호 서식>
- 소득·재산 및 인적 변동사항은 변동 “발생월” 기준 적용
(단, 발생월의 정보 확인이 곤란한 경우 “확인월” 적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디딤돌 안정소득 자격 중지
 - 원칙 : 조사 중 디딤돌 안정소득 급여 지급 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되어 중복 지급될 경우 환수 조치
 - 예외 : 소진 등으로 환수 불가할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후 면제 처리
- 자격 중지자는 확인 후 익월부터 자격정지
-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보장비용 징수 등 행정절차 수행
- 그 외 조사방법은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준용하여 처리

4. 보장비용 환수

가. 부정수급에 대한 보장 비용 징수(환수) 절차

- 부정수급에 대하여 담당자가 인지한 경우 행복e음 내 “환수 상계처리” 부정수급으로 등록한 후 「디딤돌 안정소득」 생계급여 지급 시 상계처리 또는 환수 조치

* 지자체 개별 전산시스템 본개통 전까지는 엑셀로 수기 관리 병행 필요

나. 「디딤돌 안정소득」 대상자가 맞춤형급여 수급자로 전환된 경우

- 조사기간을 감안하여 조사결정 전까지 「디딤돌 안정소득」 대상자의 생계급여는 우선 지원
- 맞춤형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이중 지원된 급여에 한하여 환수 - 맞춤형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원하고 「디딤돌 안정소득」에서의 생계급여 환수 조치
단, 이를 이미 소비하였거나 그 밖에 대상자에게 부득이한 사유로 환수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환수 면제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사회보장급여의 환수)
② 보장기관의 장은 수급권이 없는 자에게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거나 그 변경·중지로 인하여 수급자에게 이미 제공한 사회보장급여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제공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이미 소비하였거나 그 밖에 수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다. 기타 보장비용 징수 및 결손처분 절차 등은 「2024년 국민기초 생활보장사업안내」 준용

VIII 서 식

1-1. 디딤돌 안정소득 급여신청서

1-2. 디딤돌 안정소득 재신청 또는 확인조사에 따른 동의서

2. 해산·장제급여 신청서

3. 디딤돌 안정소득 급여 결정(결정·변경·중지) 통지서

4. 복지급여계좌 변경신청서

5. 디딤돌 안정소득 생활실태 조사서

디딤돌 안정소득급여 [결 정 변경·중지] 통지서

| | | | | | | |
|-------------|------|--|----------|--|------|--|
| 신청인/ 세대주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 | 주 소 | | | | 휴대전화 | |
| | | | | | 전자우편 | |
| 신청내용 | 신청구분 | | 급여·서비스내용 | | | |

비 고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디딤돌 안정소득 수급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인과의 관계 | 급여대상자 | 생년월일 | 보장구분 | | 보장급여 | 급여개시일 |
|-------------|--------------|------|-----------------|----------------|------|-------|
| | | | 근로 무능력 가구 | 근로 능력 가구 | | |
| |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 | | | | |
| | | | | | | |
| | | | | | | |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을 초과하거나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격이 중지되거나 급여가 감소 될 수 있습니다.

3. 근로능력가구의 경우 연 1회에 한해 6개월 동안 지원이 가능합니다.

부 적 합

| | | | | |
|---------|------|--|----------|--|
| 신 청 내 용 | 보장구분 | | 급여·서비스내용 | |
|---------|------|--|----------|--|

| | |
|-----------|--|
| 부 적 합 사 유 | <input type="checkbox"/> 소득기준 초과 <input type="checkbox"/> 재산기준 초과 <input type="checkbox"/> 부양의무자 부양기준 초과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 |
|-----|--|
| 안 내 | 1.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 조사·심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디딤돌 안정소득 실시가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이후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장애, 질병, 거동불편 등 개인 또는 가구여건 등의 변화 등의 변동으로 생활이 어려워져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보장기준에 적합할 시는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을 제공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변경·중지

| | | | | |
|-----|-----|--|-----|--|
| 변 경 | 일 자 | 년 월 일 부터 | 내 용 | |
| | 사 유 | <input type="checkbox"/> 소득·재산·근로능력 변동 <input type="checkbox"/> 가구의 사망·출생·현역입대·교정시설 수용 등의 가구원 변동 <input type="checkbox"/> 가구의 전출입 등 거주지 변동 등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 | | | | |
|-----|-----|---|-----|--|
| 중 지 | 일 자 | 년 월 일 부터 | 내 용 | |
| | 사 유 | <input type="checkbox"/> 사망 <input type="checkbox"/> 소득·재산 등 선정기준 초과 <input type="checkbox"/> 부양의무자의 부양사실 확인(부양기준 초과) <input type="checkbox"/> 보장시설입소, 교정시설 수용 등 주거실태의 변동 <input type="checkbox"/> 보호대상자의 급여 중지 요청 <input type="checkbox"/> 보장기관의 자료제출 요구 거부·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비 고

※ 처리기한 경과사유 등

1. 디딤돌 안정소득 신청(변경) 등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여 드리며,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해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청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위 결정사항에 대해서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수급기간 중 인적사항 및 소득재산 변동, 지급정지 사유의 소멸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직급

성명

문의 전화번호

군수, 구청장

직인

별지 제4호

| 복지급여 계좌변경 신청서 | | | | | 처리기간 |
|--|------------------------------|------|------|-----|------|
| | | | | | 즉시 |
| 신청인 | 성명 | | 생년월일 | | |
| | 주소 | | | | |
| | 전화번호 | | 휴대전화 | | |
| 급여 지급 계좌 | 현행 | 금융기관 | | 예금주 | |
| | | 계좌번호 | | | |
| | 변경 | 금융기관 | | 예금주 | |
| | | 계좌번호 | | | |
| <p>위와 같이 디딤돌 안정소득 급여에 대하여 계좌변경을 신청하오니, 현재 지급받고 있는 급여를 위 변경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 년 월 일 신청인 _____ (서명 또는 인) </p> <p style="text-align: center;">000 군수, 구청장 귀하</p> | | | | | |
| 구비서류 | 급여통장 사본 1부. (압류방지용 통장 사용 불가) | | | | |

| 디딤돌 안정소득 수급자 생활실태조사서 | | | | |
|-----------------------------|--|--|----|------|
| 1. 조사일시 | | | | |
| 2. 조사대상자 | | | | |
| 3. 조사장소 | <i>*조사대상 집주소 등 기재</i> | | | |
| 4. 조사목적 | | | | |
| 5. 조사내용 | <i>*가구구성 형태 및 근로능력 유무, 소득·재산 등 변동사항, 건강상태(질병 유무), 주 소득원 및 월 수입액, 월 지출액 등 조사내용 포함</i> | | | |
| 6. 조사결과 | | | | |
| 7. 조사자 | 직급 | | 성명 | (서명) |